

제2647호
2019. 4. 1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37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2
 제2019-38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
 제2019-39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

● 공 고

제2019-263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5
 제2019-264호 : 「퇴계로73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안) 6
 제2019-265호 : 「퇴계로88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안) 9
 제2019-272호 : 「다산된 성막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공고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37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698	551,812.81	199,833.32	451,506.97	199,762.44	중구 예관동 14
9699	551,890.18	199,849.64	451,584.34	199,778.76	중구 을지로4가 188-7
9700	551,876.65	199,702.36	451,570.82	199,631.48	중구 을지로4가 310-72
9701	551,800.37	199,702.27	451,494.54	199,631.39	중구 을지로4가 239-12
9702	551,743.33	199,693.01	451,437.50	199,622.13	중구 인현동2가 40-1
9703	551,694.90	199,664.12	451,389.07	199,593.24	중구 인현동2가 128-25
9704	551,643.91	199,668.17	451,338.08	199,597.29	중구 인현동2가 153
9705	551,651.09	199,779.08	451,345.26	199,708.20	중구 예관동 57-21
9706	551,653.99	199,844.64	451,348.16	199,773.76	중구 예관동 58
9707	551,745.35	199,851.32	451,439.52	199,780.44	중구 예관동 14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비고
설치일	2019년 3월 27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3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828-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나길 11-3	2019.04.10.	동호로17나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황학동 1087 외 4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8	2019.04.10.	마장로1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마장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39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3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2-40	2019.04.10.	건물철거
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37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2-41	2019.04.10.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길 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333	2019.04.10.	건물철거
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9-2 외 1필지	2019.04.10.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9-34	2019.04.10.	건물말소
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나길 11-3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28-2	2019.04.10.	건물말소
7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6-1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088	2019.04.10.	건물철거
8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8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087	2019.04.10.	건물철거
9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8-1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089	2019.04.10.	건물철거
10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10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091	2019.04.10.	건물철거
1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3길 10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090	2019.04.10.	건물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6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4. 10. ~ 2019. 4. 25.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서울82노21**외 14대
 - 소 유 자 명 : 이**외 14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9. 3. 1. ~ 3.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2-3396-6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연번	운행정지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
1	등록	서울82노21**	이**	470115-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2	등록	경기89마22**	김**	691123-1*****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	등록	60소08**	비엠더블유***** (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	등록	09호33**	SK **** (주)	13011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5	등록	53도42**	이**	840630-2*****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2길
6	등록	02오47**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	등록	08도18**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8	등록	서울30노33**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	등록	53조73**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	등록	07버59**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	등록	06다94**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	등록	52주27**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	등록	25루55**	오케이*****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해제	66루53**	정**	630101-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15	등록	15소03**	(주)미디어****	110111-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64호

「퇴계로73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안)

1. 「퇴계로73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의 주민과 점포주, 건물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퇴계로73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업구간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가로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 간(2019. 4. 3. ~ 4. 18.)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7층 가로환경과(☎02-3396-5975)
 다. 주요내용

- (1) 사업명칭 : 「퇴계로73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 (2) 위치 및 규모 : 56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 (3)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 (4) 사업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까지
 - (5)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 자율추진
 - (6) 사 업 비 : 140,000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시비)
 - 1업소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 라. 관련문건 : 생략(중구청 가로환경과 비치 문건과 같음)

붙임 : 퇴계로73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퇴계로73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퇴계로73길 일대(붉은색 표시 구간)



의견제출서

공람공고 사항	퇴계로73길 일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 내용	의견	
	기타	
<p>마른내로 일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시 중구청장 귀하</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65호

「퇴계로88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안)

- 1. 「퇴계로88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의 주민과 점포주, 건물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2. 「퇴계로88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업구간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가로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 간(2019. 4. 3. ~ 4. 18.)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7층 가로환경과(☎02-3396-5975)
- 다. 주요내용

- (1) 사업명칭 : 「퇴계로88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 (2) 위치 및 규모 : 86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 (3)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 (4) 사업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까지
- (5)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 자율추진
- (6) 사 업 비 : 215,000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시비)
 - 1업소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라. 관련문건 : 생략(중구청 가로환경과 비치 문건과 같음)

붙임 : 퇴계로88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퇴계로88길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퇴계로88길 일대(붉은색 표시 구간)



의견제출서

공람공고 사항	퇴계로88길 일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 내용	의견	
	기타	
<p>마른대로 일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p>		
서울시 증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72호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공고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다산권 성곽마을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및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개요

- 가. 구 역 명 :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나. 위 치 :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 다. 면 적 : 126,747㎡

1. 2. 지정 배경 및 목적

- 가. 본 대상구역은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건축물 리모델링·보전(건축물 외관 디자인 포함)에 관한 사항

- 가.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가이드라인
 - 다산권 성곽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권장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리모델링에 의한 완화사항 적용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기준 적용

4.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사항

- 건축선 후퇴부 및 필로티공간, 건물 사이 공간 등 노후주거지 내 흔히 발견되는 방치된 사유공간을 보행공간 또는 텃밭·화단, 쉼터, 폐기물수거함 설치 등 주민간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마을 내 부족한 커뮤니티공간과 생활지원공간을 확충
-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고려하여 주요지점 및 범죄우려지역에 CCTV, 가로등, 보안등 등을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안전 및 재산보호

5. 골목길의 보전·정비 계획

- 마을골목길 특화 조성
 - 성곽예술문화거리와 연계한 다산골목, 충현골목, 앵커골목 조성
 - 마을길 간이쉼터 조성(벤치, 화단 등)
 - 가로환경개선(성곽마을 이미지특화)
 - 보행환경개선
 -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

6. 건축기준 완화(연면적 증가에 관한 사항)

- 가. 건축주 등으로부터 적용의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 완화 사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 결정
- 나. 적용의 완화 심의 시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연면적의 증가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1회에 한해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
- 다.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2017. 2. 9. 개정)에서 제시하는 연면적 증가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가능(단, 완화요소를 적용한 건물에 한해서 적용)

[건축기준 완화사항]

완화항목	건축법	완화사항
대지안의 조경	제42조	미적용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3조	미적용
건축선의 지정	제46조	- 골목길 특성 보호에 한해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 3층 이하 기존건축물에 한해 현황 인정 -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건폐율	제55조	- 현행법령기준 초과시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내 - 수평 증축시 현행법령 이내 가능 -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용적률	제56조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완화비율), 기존 연면적의 30% 범위 이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이내 -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대지안의 공지	제58조	- 인접대지 소유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서 작성시 - 3층 이하 기존건축물에 한해 현황 인정 -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0조	미적용
공동주택의 일조확보	제61조제2항	미적용

[인센티브 적용 및 배점항목(최대 30%)]

구분	완화 범위	운영	계획내용	완화비율
정 책	최대 10%	권장	전면공지 및 건축물사이공간 지침 준수시	5%
		권장	공유공간 조성시	5%
		권장	CPTED 지침 중 방법시설 관련지침 준수 시	5%
		권장	CPTED 지침 중 야간조명 관련지침 준수 시	5%
외 관	최대 15%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 부착시설물 처리 지침 준수시	5%
		권장	건축물 지붕의 형태 및 색채 지침 준수시	5%
		권장	저층부 입면분할요소 세부지침 준수시	5%
		권장	담장의 조성방식, 높이,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	5%
		권장	옹벽의 조성방식,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	5%
		권장	건축물 외부형태 지침 준수시	5%
		권장	대문 미설치 또는 대문 조성방식 지침 준수시	5%
		권장	주차장 출입구 조성방식 지침 준수시	5%
내 진	최대 10%	의무	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 ² 이상 건축물 (목구조건축물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 ² 이상 건축물) 예외: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의무화	10%
에너지 절감	최대 10%	권장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교체시	5%
		권장	외기에 면한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시	5%
		권장	콘덴싱 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교체시	2%
		권장	LED 조명 교체시	2%
		권장	생활용 상수절감을 위한 환경표지인증 제품 80%이상 설치시	2%
		권장	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시	2%

붙임 :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 1부. 끝.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
 (기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동일함)

